

2.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주요 개정 사항

□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(3책5공제도 범 부처 공동시행)

- 연구자가 동시에 R&D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상한을 교과부 과제 5개에서 정부 R&D 과제 5개(연구책임자 3개)로 제한

연구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적용 과제기준(주관/협동/위탁)과 과제수 확인방법 등에 대한 세부지침 제공 ('11.2월)

- * '협약서'에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원 등 과제 수행연구자의 정부 R&D 참여 현황을 작성 → 향후 사실과 다를 경우 과제협약을 해약 또는 연구자 변경

⇒ 연구수행의 전념 유도 및 신진연구자들의 R&D사업 참여기회 확대

현행 (교과부 사업)	개정 (범 부처 공동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과부 R&D 과제 5개 (연구책임자 3개) <p><제외과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• 사전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• 연구비가 1억원 미만인 단위(세부)과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 R&D 과제 5개 (연구책임자 3개) <p><제외과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• 사전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
□ 연구개발과제의 협약

- 출장비 계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

⇒ 연구개발 예산 중 출장비 관련 계상기준의 자율성은 유지하되 공공성과 형평성을 제고

현행	개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외 출장비 : 연구기관 자체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계상 - 연구기관 여비규정 외 산학협력단 자체 여비규정 사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외 출장비 : 국공립 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, 그 외 연구기관은 자체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계상 - 연구기관의 여비규정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 여비 규정 등 별도의 여비 규정 불인정